

【 7 】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발의년월일 : 1995. 9. 15

발의자 : 洪在龍의원외 3인

□ 제안이유

최근 각종 언론매체 (TV·신문등)에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는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코자 함.

□ 주요골자

· 조사기간 : 1995. 9. 16 ~ 9. 30

· 조사실시 대상기관 : 양주군

【 8 】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5. 8. 18.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1995. 7. 1 영 제14703호)됨에 따라 양주군 조례규칙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고시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조례·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 하던것을 “군보에의 게재”로 하되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할수있도록 함. (안 제7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군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p>	<p>제7조(공포방법) 군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의회의 의장 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p>